

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85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7. 13.

제출자 : 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,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,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5조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제8호를 삭제한다.

4의2.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·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p><u>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</u></p> <p>9. ~ 18. (생 략)</p> <p>⑦ (생 략)</p>	<p>9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--	--